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The Legal Improvement for Effective Planning of the Water Vision 2020

김진수*, 이규민**
Jinsoo Kim, Gyumin Lee

요 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2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고시하였다. 그런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이 상위 개념의 법정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정계획 및 부처 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가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는 이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선적으로 수평적 연계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이수·치수 및 방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천법」 제23조제4항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른 부처별 ‘협의’는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극적 형태의 협의라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하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환경), 국민안전처(치수), 산업통상자원부(공업용수) 및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에 시달하고, 각 부처는 담당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송달한 후, 국토교통부는 이를 취합·검토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형태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에서 벗어나 상향식(bottom-up)의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하위 개념의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제24조) 및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한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수뿐만 아니라 환경, 방재 분야의 하위 법정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핵심용어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 하천법

* 교신저자·정회원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E-mail : jinsookim@assembly.go.kr

** 정회원 ·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 E-mail : greenbeing@skku.edu